

제3장

노동문제 관련 기본소득 주요 쟁점

정원호 (경기연구원,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주요 쟁점 1 :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 **노동의 미래, 즉 고용의 양적, 질적 전망에 따라 기본소득의 필요성 여부를 논쟁**

- 기본소득 지지자 : 미래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고용 양적 감소 + 불평등 심화 → 기본소득 필요

- 기본소득 반대자 : 미래에도 고용은 양적으로 증가 → 기본소득 불필요

- ☞ 노동의 미래에 대한 자세한 검토 필요

- **고용의 양적 전망**

- 비관론 : AI 등 극단적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 고용 감소

- 낙관론 : 자동화 위험은 작고, 생산성 증가로 고용 증가

- **고용의 질적 전망**

- 기간제, 단시간 등의 '전통적 비정규직' 증가에 더하여 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비정규직' 출현

- AI 등 극단적 자동화는 중간숙련의 전문직까지 해체 → 노동력 양극화, 불안정 심화

⇒ 고용의 양적 전망은 현시점에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찾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며 (그 반대도 의미가 없음),

고용의 질적 악화는 분명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불안정 취약 노동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 쟁점 2 : 기본소득의 노동유인 효과

- 노동유인, 즉 노동공급 감소론과 증가 · 불명확론 대립

- 노동공급 감소론 : 비임금소득이 생기면 일을 안 할 것이기에 노동공급 감소
- 노동공급 증가 · 불명확론 : 선택적 복지 수급자들은 복지함정을 벗어나 추가로 노동할 것
전체적으로는 사전에 예단할 수 없으며, 실증의 문제

- 기본소득과 노동공급에 관한 이론적 검토

- 다양한 경우에 있어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크기에 따라 노동시간의 증감 결정

〈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요약〉

현재상태	재원	계층	여가	노동시간
무복지	공유부	저소득층 고소득층	정상재	감소
			열등재	증가
	조세	저소득층	정상재	감소
			열등재	증가 또는 감소(또는 불변)
		고소득층	정상재	증가 또는 감소(또는 불변)
			열등재	감소
선별적 복지	공유부, 조세	저소득층	열등재	증가

⇒ 선별적 복지 상태에서는 노동공급 증가. 무복지 상태에서는 불명확.

주요 쟁점 2 : 기본소득의 노동유인 효과

-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에 관한 실증 결과**

-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실험

- *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1982~) : 비교대상 주들에 비해 고용률은 유사, 단시간 노동은 1.8%p 많음.

- * 이란 기본소득 (2011~16) : 전체적으로 노동유인에 부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남녀 모두 노동시간 증가

- *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2008~2009) : 임금노동과 자영업 모두 크게 증가. 실업률 감소

- *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2011~2012) : 고용률과 노동시간 모두 통제마을보다 기본소득 마을에서 크게 증가

⇒ 기본소득은 노동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저소득 국가에서는 오히려 노동공급을 증가시켰음.

주요 쟁점 3 : 기본소득의 임금효과

- 임금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의해 결정

- **기본소득의 노동수요 효과**

- 기본소득의 재원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유부 수익일 경우 :

- 기본소득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상품수요 증가 → (자동화 배제 시) 노동수요 증가

- 기본소득의 재원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일 경우 (소득세 가정):

- * 저소득층 (순수혜계층) : 기본소득 > 조세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 고소득층 (순부담계층) : 기본소득 < 조세 → 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 그런데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순수혜계층이 순부담계층보다 많음. 게다가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음.

- 저소득층의 소비증가 > 고소득층의 소비감소 → 경제 전체의 소비 증가

- 상품수요 증가 → 노동수요 증가

- * 2018년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 전 계층에 소득세 10% → 이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연 313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연 소비 3.36% 증가.

- ☞ 기본소득의 노동수요 효과는 양(+)으로서 임금의 인상요인 으로 작용.

-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

- 전체적으로 불명확

⇒ 기본소득의 노동수요, 노동공급 효과만으로 임금의 향방은 불명확

주요 쟁점 3 : 기본소득의 임금효과

- 기본소득이 노동조합의 교섭력에 미치는 영향

- 기본소득 지지자의 주장

- * 개별 노동자 :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는 거부할 수 있어서 교섭력 증가

- * 노동조합 : 기본소득이 추가적 파업기금이 되어 교섭력 증가

- 기본소득 반대자의 주장

- * 임금은 노동의 수요공급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 교섭력 증가는 허구.

- * 임금은 기본소득의 추가소득이 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사활적 이해를 갖지 않음 → 교섭력 약화

- * 반면에 사용자들은 기본소득을 빌미로 임금인상 거부, 최저임금 폐지, 기타 각종 노동기준 약화를 주장 → 노조 교섭력 약화

☞ 이 주장들은 그 자체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기본소득의 모델, 노사 간 세력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임.

⇒ 기본소득의 임금효과는 사전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움.

제6장

국내 기본소득 사례

정원호 (경기연구원,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국내의 기본소득 제도

- 성남시 ‘청년배당’ (2016~2018)

-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 1년간 지급
-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 등으로 사용처 제한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19~)

- 성남시 청년배당을 계승 → 내용 동일
- 31개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특징 : 연령대별 범주형 기본소득

유사 기본소득

▪ 농민기본소득

- 많은 '농민수당' 들이 농가 기준으로 동일한 현금 지급하는 데 반해, 농민 개인에게 지급
- 경기도가 2020년 시행 추진

※ 농민이라는 직업군을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 '보편적 농민수당' 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할 듯.
→ 농민기본소득 주창자도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으로 병기하고 있음.

▪ 재난기본소득

- 코로나 국면에서 전주시, 경기도, 기장군의 세 지자체가 주민 개인에게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이라는 명칭 사용
- 경기도와 기장군은 전 주민에게 동일금액(10만 원)을 지급하여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등 주요 특징을 갖추었지만, 1회 (기장군은 2회) 지급으로 정기성 결여 →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아님.
- 전주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선별 기준을 가진 선별적 현금복지로서 보편성도 결여하고 있어서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

기본소득 명칭의 사칭

-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기본소득’

-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88만 원)
- 지급액 : 시장소득과 중위소득 50%의 차액 지원
- 재원 : 기존 복지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 문제점

- 선별적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사칭
-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이 기존 사회복지 수급자와 금액보다 적어짐 → 복지 파괴 방안

기본소득 실험 계획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실험**

- 경기도 내 낙후한 1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 모두에게 동일 금액(월 10, 15, 20, 30, 50만 원 안) 지급
- 2년간 실험
- 2021년 시행 추진

- **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실험**

- 2021년부터 만 24~29세 청년 300명에게 월 52만 원씩 2년 간 지급

제7장

해외 기본소득 사례

정원호 (경기연구원,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알래스카 영구기금배당

- 1982년부터 석유수입의 일부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를 조성하여 전 주민에게 연 1회 지급
= 기본소득
 - 금액은 해마다 변동 (2020년 992 달러)
- 효과
 - 노동시장 효과 :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득분배 효과 : 빈곤율, 지니계수, 상위 1% 소득/하위 99% 소득 등에서 미국 내 가장 평등한 주의 하나
 - 범죄효과 : 우려와 달리 매우 적음

스위스 탄소부담금 - 탄소배당

- 2008년부터 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화석연료(수송용 제외) 사용에 탄소부담금 부과
 - 화석연료 가격 인상으로 사용 억제가 목표
 - 탄소배출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간마다 탄소부담금 인상 (2008년 탄소배출 톤당 12프랑 → 2018년 96 프랑)
- 탄소부담금 수입의 2/3를 국민과 기업에게 배당 (탄소배당 = 기본소득)
 - 1/3은 에너지 절감 개량사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사용
 - 가정으로부터의 탄소부담금은 국민 개인에게 균등하게 배당,
기업으로부터의 탄소부담금은 고용인원의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고용주에게 배당
 - 개인에게는 의무보험인 건강보험 계좌를 통해, 고용주에게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노령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
- 탄소부담금 – 탄소배당의 효과 : 탄소배출의 현격한 감소
- 탄소부담금으로 인한 연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탄소배당으로 인해 에너지 저소비계층인 저소득층의 부담이 완화되어 정치적 저항이 적었고, 그 결과 탄소부담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능해졌고, 결국 최종목표인 탄소배출 감축에 성공

* 호주는 2012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였으나, 탄소배당이 없어서 정치적 저항이 심하여 2014년에 폐지.

기본소득 실험들

- **진성 기본소득 실험**

- 나미비아 (2008~2009)
- 인도 (2011~2012)
- 우간다 (2017~2018)
- 케냐 (2017년부터 2년짜리, 12년짜리)
- 미국 스타кт(Stockton) 시 (2019~2020)
- 독일 (2021년 봄부터 3년간)

- **유사 기본소득 실험**

- 미국과 캐나다의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 : NIT) (1968~1980까지 5개 실험)
-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2017~2018)
- 바르셀로나의 최저소득 실험 (2017~2019)
- 미국의 Y-Combinator 실험 (계획 중)